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원이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2536

발의연월일: 2021. 9. 13.

발 의 자:김원이・박상혁・최혜영

우원식 · 김경협 · 임종성

위성곤 • 박홍근 • 이해식

기동민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식품위생법」은 「부가가치세법」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(이하 "「부가가치세법」에 따른 폐업신고 등"이라 함)한 경우 신고 업종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, 허가 업종에 대하여는 청문을 거쳐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은 공중위생영업이 신고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「부가가시세법」에 따른 폐업신고 등을 한 영업장에 대하여 직권말소 또는 폐쇄명령 두 가지를 모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혼선이 야기되고 있으며, 「식품위생법」과 달리 직권말소 시에도 청문을 거치도록하고 있어 신속한 폐업처리에 어려움이 있음.

이에 폐쇄명령을 할 수 있는 사유에서 「부가가치세법」에 따른 폐업신고 등을 한 경우를 삭제하고, 청문절차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

하는 바에 따라 직권말소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공중 위생영업의 폐업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3조제3항, 제9 조제6항, 제11조제3항제2호 및 제12조제1호 삭제). 법률 제 호

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 중 "신고 사항"을 "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사항"으로 한다.

제9조제6항 본문 중 "관광진흥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"를 "「관광진흥법」 제4조에 따라"로 한다.

제11조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.

제12조제1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	제3조(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
폐업신고) ①・② (생 략)	폐업신고) ①・② (현행과 같
	음)
③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공중	③
위생영업자가 「부가가치세	
법」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	
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	
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	
말소한 경우에는 <u>신고 사항</u> 을	<u>보건복지부령으로 정</u>
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.	하는 바에 따라 신고 사항
④・⑤ (생 략)	④·⑤ (현행과 같음)
제9조(보고 및 출입・검사) ① ~	제9조(보고 및 출입・검사) ① ~
⑤ (생 략)	⑤ (현행과 같음)
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	6
적용함에 있어서 <u>관광진흥법</u>	<u></u> 「관광진흥
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	법」 제4조에 따라
등록한 관광숙박업(이하 "관광	
숙박업"이라 한다)의 경우에는	
해당 관광숙박업의 관할행정기	
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	<u>.</u>
한다. 다만, 보건위생관리상 위	
해요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	

급한	사유가	있는	경우에는	コ
러하:	지 아니	하다.		

제11조(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) 저

- ① ② (생 략)
- 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.
- 1. (생략)
- 2. 공중위생영업자가 「부가가 치세법」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 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
- ④ ~ ⑥ (생 략)
- 제12조(청문)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
 - 1. 제3조제3항에 따른 신고사항 의 직권 말소
 - 2. ~ 4. (생 략)

·.	
제11조(공중위생영업소의 🏻	폐쇄등)
①・② (현행과 같음)	
③	
<u>.</u>	
1. (현행과 같음)	
<u><삭 제></u>	

	4	~	6	(현	행괴	- ~ ~	같음)	
제	123	조(>	청문	.)					
	<스	}	제>	<u>></u>					

2. ~ 4. (현행과 같음)